제27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27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7월 11일 (수) 오전 9시00분

2. 장 소 : 쉬프트정보통신(주) 본점 교육장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삼평동) PDC타워 C동 602호
- 대중교통 이용방법
  지하철 : 판교역(신분당선) 4번 출구에서 버스 탑승 후, 이노밸리 버스 정류장 하차
  (이용가능 버스 : 71, 75, 602-1, 602-2)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약력)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최 재 원	75.02.15	- LGCNS TA - 현. 쉬프트정보통신(주) 기술지원이사
유 용 환	61.10.23	- 숭실대정보과학대학원 정보산업학 석사 -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SC증권 - KTB투자증권 전무
홍 준 호	69.12.1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Harvard Law School (LL.M., 2005) - 현. 김·장 법률사무소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후보자 약력)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이 용 수	59.12.15	- 분당세무서 법인납세과장 - 현. 이용수 세무회계사무소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별첨)

◆ 그 외 건들은 현장발의로 처리함.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 하에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 관련 문의는 총무팀 안창현 차장에게(02-464-7676)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월 26일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영 식 (직인생략)

위 임 장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 제27기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체 위임합니다.

- 다 음 -

1. 회사명 :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
2. 의결권 주식수 :

2018년 월 일

주주 성 명 : (주민번호 :)(서명or인감)
주 소 :
전화번호 :

유 첨 : 신분증 사본 1부.

정관변경안(별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0조(신주인수권) ⑤제2항에따라주주외의자에게~~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⑤제2항에따라주주외의자에게~~2주전까지주주에게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한다. 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165조의9의경우적용하지아니한다.	법개정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1.회사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범위내에서회사의설립,경영과기술혁신등에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임,직원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다만,증권거래법제189조의4제3항의규정에따라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범위내에서이사회의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2.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격을갖춘임,직원등중에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제10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인을말한다.이하같다)다만,당해법인의임원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는제외한다. 2)주요주주(증권거래법제188조의규정에의한주요주주를말한다.이하같다)및특수관계인.다만,당해법인으로임원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는제외한다. 3)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주요주주가되는자 3.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교부할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시가와의차액을현금또는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경우에는그차액의산정기준이되는주식을말한다.)은기명식보통주식으로한다. 4.임직원등1인에게각각부여하는주식매수선택권은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 5.주식매수선택권은이를부여하는주주총회의결의일로부터3년이경과한날로부터4년이내에한하여행사할수있다. 6.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를취소할수있다. 1)당해임.직원등이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후임의로퇴임하거나퇴직한경우 2)당해임.직원등이고의또는과실로회사에중대한손해를초래하게된경우 3)기타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정한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 7.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주식의1주당매수가격은장외등록및상장이전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에서정하는가격에의하고,장외등록및상장이후에는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9의제2항에서정하는가격에의한다.단이가격이액면가에미달할경우에는액면가로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범위내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다만,상법제542조의3제3항의규정에따라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범위내에서이사회의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이경우주식매수선택권은경영성과또는주가지수등에연동하는성과연동형으로부여할수있다. ②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이사회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한경우에는그부여후최초로소집되는주주총회의 승인을얻어야한다. ③제1항의규정에의한주식매수선택권부여대상자는회사의설립·경영·해외영업또는기술혁신등에기여하거나기여할수있는회사의임·직원및「상법시행령」제9조제1항이정하는관계회사의임·직원으로한다.다만,회사의이사에대하여는이사회의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없다. ④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상법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최대주주(이하"최대주주"라함)와주요주주및그특수관계인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없다.다만,회사또는제3항의관계회사의임원이됨으로써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된자(그임원이계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 이사·감사인경우를포함한다)에게는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 ⑤임원또는직원1인에대하여부여하는주식매수선택권은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 ⑥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를취소할수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임·직원이본인의의사에따라사임하거나사직한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임·직원이고의또는과실로회사에중대한손해를끼친경우 3.회사의파산또는해산등으로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에 응할수없는경우 4.기타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정한취소사유가발생한경우 ⑦회사는주식매수선택권을다음각호의1에서정한방법으로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으로새로이기명식보통주식(또는기명식종류주식)을발행하여교부하는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으로기명식보통주식(또는기명식종류주식)의자기주식을교부하는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가격과시가와의차액을현금또는자기주식으로교부하는방법 ⑧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자는제1항의결의일부터2년이상재임,5년이내에권리를행사할수있다.다만,제1항의결의일로부터2년내에사망하거나그밖에본인의책임이아닌사유로퇴임또는퇴직한자는그행사기간동안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수있다. ⑨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할주식의1주당행사가격은다음각호의가액이상으로한다.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한후그행사가격을조정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새로이주식을발행하여교부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 가격중높은가격 가.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일을기준으로한주식의실질가액 나.당해주식의권면액 2.자기주식을양도하는경우에는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을기준으로한주식의실질가액 ⑩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하여발행한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에관하여는제13조의규정을준용한다.	법개정 (증권거래법 =>상법,자본시장법) 변경전:주식매수선택권조항전부삭제 변경후:신규제정
제24조(소집권자) ②대표이사(사장)의유고시에는정관제39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24조(소집권자) ②대표이사(사장)의유고시에는정관제38조의규정을준용한다.	오기
제55조(외부감사인의선임) 회사가외부감사인을선임함에있어서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감사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하고,회사는외부감사인을선임한후최초로개최되는정기주주총회에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제55조(외부감사인의선임) 회사가외부감사인을선임함에있어서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감사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하고,회사는외부감사인을선임한후최초로개최되는정기주주총회에그사실을보고하거나,주주에게통지또는공고하여야한다.	법 개정